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-1120호

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련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108-1번지 화랑주택 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(변경) 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변경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화랑주택 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06월 05일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4. 06. 05. ~ 2024. 06. 18.(14일)

나. 공람장소 : 조합사무실 및 구로구청 주택과

다. 공람내용

1)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- 명칭 :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
2)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치 : 구로구 오류2동 108-1번지
- 면적 : 6,880㎡

3)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2025년 8월

○ 준공예정일 : 2028년 8월

4)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

○ 명칭 :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이창기)

○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0, 3동 113호

5) 변동사항

○ 조합정관 일부 개정

기존	개정 안
제 5조 (시행방법)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,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, 조합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.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융자금 또는 협력업체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 5조 (시행방법)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,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, 조합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.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융자금 또는 협력업체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> ③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로구청장 또는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로구청,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에게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